

誘導燈 및 誘導標識의 規格 및 추천 규정

本 規程은 1975年 3月 20日 內務部 告示 第2號로 고시한 消防法 第33條 第1項 및 同 施行令 第13條 第4項 第2號에 규정된 誘導燈 및 誘導標識의 規格 및 추천에 관한 規定을 全載하오니 業務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編輯部 註)

제 1 장 유도등 및 유도표식의 규격

제 1 조 (목적) 소방법 제33조 제 1 항 및 소방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제 4 항 제 2 호에 규정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성능 및 규격과 추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유도등, 유도표지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구 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가 있다는 뜻을 명시한 녹색등화를 말한다.
2. 계단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라 함은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곳으로 피난에 유효한 조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라 함은 복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피난할 방향을 명시한 녹색등화를 말한다.
4. 거실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라 함은 집무 작업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등 개방된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의 방향을 명시한 녹색등화를 말한다.
5. 객석유도등이라 함은 객석의 통로부분에 설치하여 피난의 방향을 명시한 녹색등화를 말한다.
6. 유도표지라 함은 복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한 표식판을 말한다.

제 3 조 (피난구유도등의 일반구조 및 재료) 피난구조유도등의 일반구조 및 재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재료 및 부분품은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외함(표지면 및 조사면을 제외)의 재료
 - 가. 방청가공된 금속판으로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내열성 유리판으로 두께 3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다. 회로판은 두께 2mm 이상의 절연체로 하여야 한다.

2. 외함의 구조

- 가. 기구내부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어서는 아니된다.
- 나. 기구내부의 온도가 이상 상승되지 아니하도록 외함의 양측면 또는 밑면등 적당한 곳에 방열공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된 것에 있어서는 윗면에 방열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유도등내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성능에 이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외함은 벽, 천정등에 설치하기 용이하여야 한다. 라.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수, 방습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유도등의 누전 기타 사고방지를 위하여 휴즈를 부착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표시면의 규격을 가로 365mm 세로 135mm 폭 100mm 의 평활한 장방형이어야 한다.

가. 표시면의 이면은 백색판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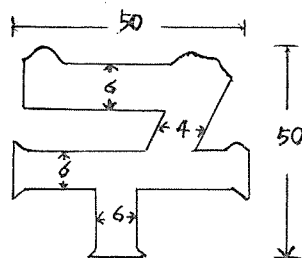
나. 표시면(조명하기 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난연재 또는 방염성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변형, 파손, 변색되지 아니하고 투광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광 또는 EL 램프를 사용하는 표시면에 있어서는 투광성 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면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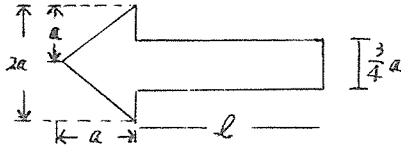
가. 글자는 “비상구” “비상계단”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EXIT” 또는 화살표를 명기할 수 있다.

나. 글자의 크기는 각기 25cm² 이상이고, 병기글자(EXIT)는 12.5cm² 이어야 한다.

다. 글씨의 서체는 각 고딕체, 환고딕체 또는 명조체로 하고 자획의 굵기는 6mm (병기글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명조체에 있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하여야 한다.



라. 표시면의 화살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하여야 한다.



($l \leq 2a$ 의 것은 로 할 수 있다.)

$a=12.5\text{mm}$ 이상

단위 : mm

마. 표시면의 바탕색은 녹색, 표지글자 및 화살표는 무채색(백색)이어야 한다.

5. 내부 부품

가. 내부의 부품은 점검, 보수등이 용이하고 접촉하기 쉬운 충전부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광원은 EL 램프는 또는 다음의 백열전구 이거나 형광등일것, 다만,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구를 2개이상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백열전구는 단 코일전구(일반조명용) 2중 코일전구(일반조명용) 또는 KS C 7504 소형전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형광등은 KS C 7601(일반조명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전선

① 전선의 종류는 KS C 3302 전기기기용 고무전열 구출선 KS C 3304 기구용 비닐코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파이프 펜던트 방식의 파이프속 전선은 600볼트 내력비닐전선 이상의 절연성을 갖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구출선은 쉘티와이어선으로서 각기 배선의 굵기는 0.75mm^2 이상이어야 한다.

④ 구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에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출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추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선을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는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용전압은 2볼트 이상 300볼트이어야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은 300볼트를 초과할 수 있다.

7. 수송도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8. 파이프 펜던트 방식은 설치상태에서 기구가 기울러지지 아니하도록 평형으로 부품을 배열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원) 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정전시 상용전원은 비상 전원으로 정전복구 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비상전원은 300 싸이클 이상의 충방전 성능을 갖는 밀폐형 닛켈카드늄 축전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연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200싸이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20분간 이상 점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온도 변화에 의하여 변형, 변질 또는 액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과충 방전 및 단락의 경우 축전지 내부 가스등에 의하여 파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내부 가스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축전지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가.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를 갖는 자동과 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되 과충전 우려가 없는 것은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전기적 기구를 갖는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 우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전환장치, 자동과충전방지장치 및 자동과방전 방지 장치 등은 분진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축전지에서의 배선(충전회로, 방전회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배선은 상용전원(강전회로)에서 배선과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연결하되 색별로 배선할 경우에는 상호 접촉하여 배선할 수 있다.

나. 배선은 외함과 완전히 절연되어야 한다. 다만, 콘덴샤를 이용하여 외함 등에 접속할 경우 콘덴샤 등에 의하여 전류가 누전될 우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선회로에 발진회로 등을 동시에 배선하는 경우 다른 기기의 배선 등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되는 광원은 KS C 7504 소형전구 또는 KS C 7502 자동차용 전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구 2 개 이상을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상용전원 점등시 소전구의 점등시험을 유도등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자동복구형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등시험의 방법은 당해 유도등의 상용전원으로 점등되고 있는 광원 및 전원을 차단하고 연속 20분간 이상 점등할 수 있어야 한다.

8. 상용전원 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차단

하였을 경우 축전지에 충전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차단상태에서도 정전되었을 경우와 같이 즉시 자동적으로 비품점등이 되어야 한다.

9. 자동충전장치, 자동과충전방지장치 및 과방전방지장치 등을 작동하기 위한 전원을 상용전원에서 강압하여 당해 장치에 공급할 경우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피난구유도등의 일반성능) 피난구 유도등의 일반성능, 검사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구조검사는 제 3 조에 기준을 준용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배선(축전지를 제외한다)의 양단자를 일괄하여 비충전부와 사이에 절연저항을 직류 50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측정하여 강전회로 및 약전회로가 각각 5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시험의 경우와 같은 조건(약전회로를 제외한다)으로서 충전부와 비충전부의 사이에 사용전압 150볼트 이하의 경우에는 1000볼트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의 경우에는 1500볼트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1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4. 식별도 시험은

가. 상용전원점등(정상사용상태로 연결상용전압에 의하여 점등후 주의 조도를 10룩스에서 30룩스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미터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점등(비상전원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점등하고 주의조도를 0룩스에서 1룩스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위치에서 각각 보통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표시면의 글자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나. 점등시의 문자부분의 평균위도와 바탕색의 평균 위도 대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6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frac{\text{글자부분의 위도} \times \text{바탕색부분의 휘도}}{\text{글자부분의 휘도}} \times 100 \text{ 퍼센트}$$

다. 점등시의 바탕색은 한도건품(색의 상한 하한을 표시한 것) 등에 의하여 측정하고 KS A 3321 안전색광 사용표 1 및 별표 1에 기재하는 녹색의 범위내에 들어야 하고 바탕색의 투과율(이하 직선 투과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에서 9퍼센트까지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라. 반사광을 이용하는 것의 바탕색은 색채건물 등에 의하여 비교측정하였을 때 다음에 기재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

색 명	색 상	명 도	채 도
녹	5±2.5	5±0.5	3이상

5. 온도상승 시험은 상용전원점등 또는 비상전원점등

에 있어서의 온도상승은 기구내 상단, 안정기 표면, 소켓변압기 및 계전기 등의 주위온도가 30도(±10 퍼센트 범위내 이어야 한다)인 상태에서 점등, 각 부분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치가 40데그(deg)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40 데그(deg)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사용부품 등의 내열처리 상태가 그 온도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음시험은 상용전원점등 또는 비상전원점등의 상태에서 유도등에서 발하는 소음의 크기는 0.2m 의 거리에서 40포운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측정조건은 비상점등 상태에서 유효하게 점등되고 있을 때 또는 상용점등으로서 정격전압 ±10퍼센트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7. 방수시험은 비, 이슬 등에 젖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명조기구의 방수시험 KS A 1023에 적합하게 시험한다.

8. 충전부 노출판정시험은 광전회로의 충전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전부 이외의 물체와의 상호 간격은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백열전구의 금구의 방전등용 점등관의 금구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자동절환 장치의 작동시험

가. 전압은 정격전압 70퍼센트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하며 15퍼센트 이상에서 정확히 절환되어야 한다.

나. 정격전압 ±10퍼센트의 전압을 가하여 절환동작을 100회 반복하였을 때 절환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 자동과충전방지장치 또는 보상충전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퍼센트의 수치가 되었을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가 정격충전 전류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축전지의 성능에 변화가 없는 것은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에서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퍼센트의 수치가 되었을 때 축전지가 과충전되어서는 아니된다.

(2) 시한충전장치는 전 제 1 호 이외에 축전지 완전 충전 상태에서 당해 장치의 설정시간 ±10퍼센트로 축전지에 충전하였을 때 과충전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3) 보상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는 축전지가 완전충전상태에서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퍼센트의 수치가 되었을 때 축전지는 과충전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4) 자동과방전방 장치 및 시한방전장치 당해 장치

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pm 10\%$ 퍼센트가 되었을 때 축전지가 과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0. 축전지의 공칭용량, 충전전류 용량등의 시험

가. 공칭용량은 10시간을 전류(축전지에 지정된 공칭용량치를 10으로 제하고 얻은치에 상당한 암페어수)로 10시간 방전한 후 10시간을 전류로서 공칭용량의 150%에 상당하는 충전을 하고 다시 5시간을 전류에서 방전중지전압(다만, 전지당 공칭전압의 80%)으로 5시간 이상 연속 방전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위온도가 20도($\pm 10\%$ 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에서 실시한다.

나. 충전용량은 당해 유도등에 공칭용량의 15%에 상당한 충전을 한 것을 12시간 비상점등(방전)후(정격전압으로 24시간 충전한 그 직후) 제 4 조 제 2 호 “가”에 의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용량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위온도는 30도($\pm 1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외과구조는 공칭용량의 150%에 상당한 충전을 한 것을 당해 유도등으로 12시간 방전후, 24시간 충전 반복시험을 5회이상 실시하여 변형 및 액체가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 온도상승은 당해 유도등에 가하는 정격전압이 $\pm 10\%$ 로서 허용온도이어야 한다.

제 6 조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구조 및 재료)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의 구조 및 재료는 제 3 조(제 4 호 제 5 호 및 제 6 호의 “나”(1)을 제외한다) 및 제 4 조(제 6 호를 제외한다)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광원은 백색으로 백열전구 또는 형광등이어야 한다.
2. 외함의 구조는 상면 또는 답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일반성능)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구조 검사는 제 6 조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2. 일반성능 시험은 제 5 조(제 1 호 및 제 4 호를 제외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조도시험은 유도등을 상면 또는 답면에서 높이 2.5미터의 위치에 설치하고 상용전원 및 비상용전원으로 점등하여 20분간 점등후(제 5 조 제 9 호 “다”의(1)에 의한 충전용량, 시험 조건을 말한다) 당해 유도등의 바로 밑 10미터의 위치에서 측정 0.5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가. 측정장소는 암막실등으로 말한다.

나. 측정기의 수광면은 상면 또는 답면에 수평(수평면 조도)또는 광원에 대한 직각(법선 조도)의 위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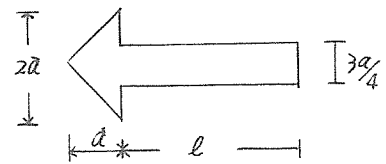
제 8 조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구조 및 재료)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의 구조 및 재료는 제 3 조 제 1 호 제 6 호 내지 제 8 호 및 제 4 조(제 7 호는 제외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표시면의 규격은 가로 250mm 이상이고, 세로 80mm 이상의 장방형으로 하여야 한다.

가. 표시면의 글자, 화살표 및 색은 다음과 같다.

나. 표시면의 표시는 화살표를 주체로 하고 비상구, 비상계단의 글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 화살표의 크기 및 병기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비 상 구 l_a

l_1

$$a=25\text{mm 이상 } l=1.4a \sim 3.5a \quad a+l > l_1, d=1.4a$$

(1) 표시면의 바탕은 백색, 화살표 및 병기글자는 녹색으로 한다.

(2) 병기글자의 크기는 12.5제곱센티메타

라. 상용전원 점등시 소전구등의 점등시험을 할수 있는 자동복구형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등시험의 방법은 당해 유도등의 상용전원으로 점등하고 광원 및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20분간 이상 연속적으로 자동점등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9 조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성능)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구조검사는 제 8 조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일반성능 시험은 제 5 조(제 1 호 및 제 4 호는 제외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식별도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상용전원 점등시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점등시에는 직선거리 15미터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색도, 화살표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나. 점등시의 글자 부분 및 바탕색의 휘도대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여 65%이상이어야 한다.

$$\text{휘도대비} = \frac{\text{바탕색부분의 휘도} \times \text{글자부분의 휘도}}{\text{바탕색부분의 휘도}} \times 100\%$$

다. 점등시의 화살표 및 병기글자의 색의 안전색광은 제 5 조 제 4 호 “다”와 같아야 하며 녹색부분의 투과율은 3%에서 10% 범위내이어야 한다.

라. 반사광을 이용하는 화살표 및 병기글자의 색은 색채견본에 의하여 비교측정한 것이 제 5 조 제 4 호 “라”의 표에 계기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

마. 상용전원 점등 및 비상전원점등 20분후 당해 유도등의 직상부 1미터 높이에서 범선조도 1룩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거실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구조 및 재료) 거실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구조 및 재료는 제 3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6 호 내지 제 9 호 또는 제 4 조에 정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표시면의 규격은 가로 365 mm , 세로 135 mm 폭 100 mm 의 평활한 장방형이어야 한다. 다만, 집회장 오락장등으로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적지 확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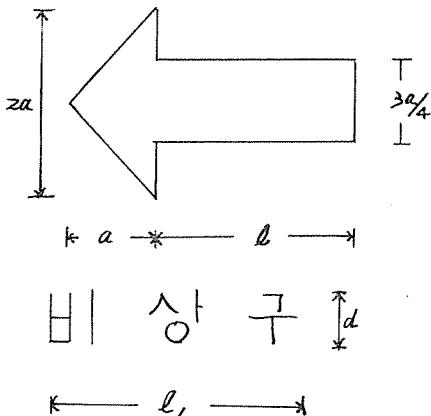
2. 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료는 두께 1 mm 이상의 합성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파손, 변질하지 아니하는 투광성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광 또는 EL 램프를 사용하는 표시면에 있어서는 투광성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

3.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상면과 피난방향 (역방향을 포함한다)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난방향을 조사하는 부분은 외함에서 10mm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1) 표시면의 화살표 및 병기글자의 색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표시는 화살표를 주제로 하고 비상구, 비상계단등의 글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2) 화살표 및 병기글자는 다음과 같다.



$$a=30\text{mm 이상}, l=1.4a\sim 3.5a \quad a+l < l, \quad d \leq 1.4a$$

3) 병기글자의 크기는 각 12.5cm^2 이상 이어야 한다.

4) 표시면의 바탕색은 백색, 화살표 및 병기글자는 녹색으로 한다.

5) 병기글자의 서체는 제 3 조 제 5 호 “다”에 의한다.

제11조 (거실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점사) 거실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검사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일반성능시험은 제 5 조 (제 1 호 및 제 4 호를 제외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식별도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용전원등식에 직선거리 30미터 위치에서하고 비상전원 점등시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가. 점등시의 화살표 및 병기글자 부분의 평균휘도와 바탕색의 평균휘도와의 휘도대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65% 이상이어야 한다.

$$\text{휘도대비} = \frac{\text{바탕색부분의 휘도} - \text{화살표(병기글자포함) 부분의 휘도}}{\text{바탕색부분의 휘도}} \times 100$$

나. 점등시의 화살표 및 병기글자의 색은 한도견본에 의거 측정하여 안정색광 범위내이어야 하고 더욱 녹색의 투과율이 3%에서 10%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광을 이용하는 것 및 EL 램프를 사용하는 것의 투과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반사광을 이용하는 화살표 및 병기글자의 색은 색채견본에 의하여 비교측정 다음에 계기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

색명	색 상	명 도	채 도
녹	5 ± 2.5	5.5 ± 0.5	3이상

(2) 조도시험은 상용전원점등 및 비상전원점등 20분간 경과후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표시면에 대하여 직각방향에서 0.5미터 거리의 상면에서 측정 1.0룩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조건등은 제 7 조 제 3 호에 의하는 이외 상면에서 유도등 밑면까지의 설치높이는 2.5미터로 한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된 것에 있어서는 설치높이를 2미터로 할 수 있다.

제12조 (객석유도등의 구조 및 재질) 객석유도등의 구조 및 재질은 제 3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 (“나”를 제외한다) 내지 제 8 호, 제 4 조 및 제 8 조의 제 1 호에 규정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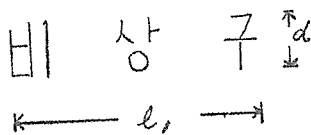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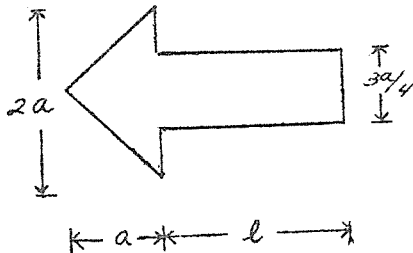
1. 광원은 백색으로 제 6 조의 1 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백열전구의 설치개수는 1 개로 할 수 있다.
2. 외함은 제 3 조제 3 호의 “가”의 기준 이외에 벽등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상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축전지를 내장한 것에 있어서는 원거리에서 조작절전하여도 축전지의 충전에 의하여 상용전원이 정전할 경우 즉시 비상점등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원거리 조작에 의하여 상용전원 및 축전지에서의 전원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객석유도등의 성능시험) 객석유도등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제 5 조 (제 1 호 및 제 4 호를 제외한다)에 정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구조검사는 제 12 조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조도시험은 유도등을 상면 또는 담면에서 높이 0.5 미터 거리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20분간 점등후 당해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미터 거리의 상면에서 측정 수평조도 0.2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측정 조건은 제 6 조제 4 호의 “가”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4조 (유도표지의 구조재료 및 성능) 유도표지의 구조재료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재료는 금속판 합성수지 또는 목판등으로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표시면의 크기는 길이 300mm 이상 세로는 가로 3분의 1로 균형잡힌 장방형이어야 한다.
3. 표시는 화살표를 주체로하여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 등의 문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4. 화살표의 크기와 병기 문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a=30\text{mm}$ 이상 $l=1.4a \sim 3.5l$ $a+l < l$ $a \leq 1.4a$

5. 병기문자와 크기는 12.5제곱센티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6. 표시면의 색채는 판면은 백색, 화살표 및 병기문자는 녹색이어야 한다.
7. 식별도의 시험은 주위조도 50룩스의 상태에서 직선 거리 25미터의 위치에서 정상시력으로서 표시의 내용이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제15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형식)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피난구 유도등
2. 통로유도등
3. 객석유도등
4. 유도표지

제16조 (명판) 유도등의 명판은 외함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병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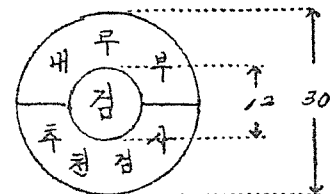
1. 제품의 형식
2.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3. 제조자 및 상호
4. 정격전압 및 주파수
5. 유효조도 거리
6. 축전지의 종류 용량 및 전압
7. 광원의 종류 및 전압전류
8. 추천번호 및 검사년월일
9. 기타 주의사항

제 4 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추천

제17조 (추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그 설치 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이외에 추천신청, 검사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잠정규칙 및 제248조 내지 제259조를 준용한다.

제19조 (검사합격표지) 추천검사 합격표지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밀리미터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